

제434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3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438)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438) 1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송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송기현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법률안 상정하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항은 국회법 제59조제1호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습시다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써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438)

(10시15분)

○위원장 송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조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법안의 내용하고 수정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김종민·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중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지역구 시의원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의 내용 중 광역의원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적용례와 관련하여 조 제목 및 적용 대상이 되는 선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송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처리할 때 세종시 관련된 부분이 같이 처리되지 않고 뒤늦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전문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정개특위가 그것을 누락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회의록에 명백히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을 명백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지방의원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들어와야 되고요. 제주와 세종은 별도 특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안과 세종특별시 개정안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세종시 관련법은 전혀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제주시는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심사한 결과 교섭단체 간의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 중에 세종시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고 제주도에 대한 부분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지역구 의원께서 개정안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뒤늦게 월요일 날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위원장 송기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종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법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 봤나요?

○전문위원 조문상 그건 확인해 본 바는 없는데요. 원래 통상적으로 지방선거 앞두고는 제주도 개정안하고 세종시 개정안은 같이 들어오는 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돼 왔었는데 이번에는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뒤늦게,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비례대표 정수 확대 부분이 한 2주 전부터 대중 알려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도 났으면 되는데 개정안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아한 부분이 있었고,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기현** 저희 첫 회의를 할 때 제주하고 세종시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외에 개별 법률로 그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이 돼야 된다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전문위원 조문상**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안으로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 특위의 경우에는 소관 법률이라는 게 행안위로부터 이송된 법안이 아마 소관 법률이 될 거고, 그 소관 법률 내에서 위원회안을 제안하면 되는데 이송된 법안 자체에 세종시 개정안이 없기 때문에, 아예 들어온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의 소관 법률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안을 제출하는 것이 권한에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위원회안을 제출하는 것도 약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송기현** 그리고 저희들이 정개특위를 하면서 제주하고 세종시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었고, 그래도 저희들이 최종 협의할 때까지 개정안이 제출 안 돼서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이 현행대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개정안을 냈다는 말씀 드리고, 사후에 이 부분이 그 지역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양당 합의하에 추가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차관님한테 하나 좀 여쭙보려 그러는데요.

지금 제주·세종이 공직선거법과 별개 규정으로 선거구 확정 또 지방의원 정수 문제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또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생겼잖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특별지자체가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각각, 그러니까 공직선거법과 별개로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그런 특별지자체가 생기더라도 아예 공직선거법의 규정으로 다 일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한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현**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제주를 지역구로 둔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세종과 제주는 기초지자체가 없다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규정을 두기에는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고 다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들어가게 되면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개별 법률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세종자치시 특별법이 논의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법은 원래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올리는데, 14%라는 게 꼭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20%에서 25%로 늘렸고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율 자체가 지역구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전체 의원 수의 일정 비율로 비례를 정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법재량이고.

저희가 논의할 때 세종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본인들이 비례대표나 지역구 의석 수 비율을 정할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논의하지 않았던 거고 이게 누락되는 않은 건데, 오늘 법안 발의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마치 입법 미비사항이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사실과 다르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현 그래서 전문위원 보고 이후에 제가 그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 보고를 하도록 말씀드린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려했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법안이 안 됐다가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요청이 있어서 양당 합의하에 처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통상 법률안 대체토론 이후에는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축조심사를 거치지만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로 긴급히 처리되는 안건인 만큼 전체회의에서 간략히 축조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법안 제19조 및 부칙 제1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 2조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서 동 안건에 대해서 긴급한 사유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종민 의원과 강준현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만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인사에 앞서서 차관님하고……

선관위에서는 안 나오셨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세종특별자치시 법안 소관은 저희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보니까 저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기현** 도 의회에서 하는 지방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해 가지고는 행안부는 같이 참여하나요? 어떻게, 권한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이게 조례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연락을 취해서 5월 1일까지는 모든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도록 17개 시도하고 잘 협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현** 위원장이 한 가지만 차관님께 좀 물어볼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청주시 흥덕구의 경우에 이번에 광역의원 선거구가 4개에서 5개로 늘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개정할 때 기초의원 선거구에 관한 표를 부칙에 첨부하면서 기초의원 선거구는 종전과 그대로 4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은 5개고 기초는 4개가 돼서 광역 2개에 기초가 걸려 가는 그런 기초선거구가 생기게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 법률 규정에는 광역에 따라서 기초가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칙 표에도 불구하고 광역선거구에 맞추어서 기초선거구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그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약간의 문제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기현**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번에 부칙에서 보시면 그 규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이 되거든요. 그 26조 4항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된 부칙에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증원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현** 아니, 이것을 조례에서 현행 광역선거구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가능성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그 부분은 선관위가 좀 유권해석을 내려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 갖고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서 문제가 없이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실무자들이 애기를 주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송기현**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흥덕구의 기초의원 정수가 이번에 정해졌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장 송기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초의원 정수가 열둘이 됐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1명입니다.

○**송재봉 위원** 현재 11명에서 2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송기현** 그래서 13명? 13명이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2명이 늘어나게 돼 갖고요.

○**위원장 송기현** 13명이 됐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장 송기현 그 늘어난, 증원된 정수를 인근 다른 구로 옮길 수 있나요, 조례로? 그것은 안 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기현 예를 들어서 홍덕구에 배정된 13명의 정원을 1명 빼서 홍덕구를 12명으로 하고 인근의 다른 구를 1명 늘려서 한다면 이것도 도 조례로 할 수 없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선관위가 이 정수는 지키게끔 가이드라인을 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기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께서 선관위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부분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장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현 감사님.

○서일준 위원 홍덕구 같은 경우에 광역이 하나 신설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광역이 하나 신설되면서 기초가 1명 늘어나고 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하면서 인센티브로 또 한 석이 늘어나고 하는 형태로 윤건영 감사님하고 그때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일준 위원 그리고 거기 부칙의 표에 붙어 있는 것 보면 가령 새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돼 있는 것은 아예 구체적으로 어느 국회의원 지역구에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딱 특정이 돼 있습니다, 시범실시 지역이. 그런데 4년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정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 가·나·다가 있는데 그중에 ‘가’에 시범실시, 그러면 ‘나·다’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표시는 돼 있지만 ‘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차관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시범실시 지역이 이번에 새로 추가로 들어간 지역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가’나 ‘나’나 ‘다’로 정확하게 딱 명기가 돼 있습니다. 명기가 돼 있는데, 4년 전에는 그렇게 명기를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4년 전에 정한 걸 그대로 한 번 더 실시하자…… 그래서 그 표를 자세히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에 가·나·다가 있다면 그중에 ‘가·나’는 해당이 안 되고 ‘다’는 추가 1인 증원하면서 시범실시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추가 증원하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래서 시도 의회에서는 ‘가·나’는 손댈 수가 있고 ‘다’는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행안부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증원된 구역이 있는 게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현 그러면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나오셔서 가지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송기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과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김문수 김승수 김은혜 김재섭 김한규 박덕흠 배준영 서일준 송기현 송재봉
윤건영 윤준병 이상식 이해식 임미애 임종득 정춘생 조승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